

광주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5891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나5891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가소61583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우

담당변호사 정지웅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1. 11. 12.

판결 선고 2021. 11. 26.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가소61583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1.부터 2021.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광주고등법원 2018르4014(본소) 이혼 등 청구의 소, 같은 법원 2018르4021(반소)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서, 2020. 7. 22.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채권'이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변호사 C은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D 판결에 따른 수임료채권 43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5,273,774원을 집행채권(이하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산분할채권 중 위 금액에 달하는 금액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 7. 27.자 2020타채60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20. 7. 30. 원고에게, 2020. 10. 21.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20. 8. 19. 광주지방법원 2020년 금제6593호로 이 사건 재산분할채권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160,241,095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라. C은 2020. 8. 28. 광주지방법원 2020머3812호로 원고를 상대로 5,273,774원의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20. 원고가 C에게 520만 원을 2020. 11. 30.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C에게 2020. 10. 26., 원고에게 2020. 11. 5. 각 송달되어 2020. 11. 20.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0. 11. 9. C에게 5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데,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이는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에 따른 급부를 제공하더라도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압류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부담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참조). 이 경우 이중변제를 한 제3채무자는 변제를 받은 채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및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재산분할채권 중 위 명령의 청구금액 5,273,774원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추심금 520만 원을 압류채권자로서 추심권을 취득한 C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산분할채권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하여 피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추심금 520만 원을 C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임에도 C과 피고에게 520만 원을 이중으로 변제한 것이고,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무상증여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위 변제공탁에 따른 변제는 민법 제742조의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는 C에게 보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집행채권은 지급이 완료되어 소멸하였음에도, 1) C이 피고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이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추심금 52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중으로 보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항할 권리가 없고, 이 사건과 관련된 잘못은 C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20. 10. 21.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고 2020. 11. 6. C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에게 보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위 사무장은 같은날 피고에게 '금 300만 원. 위 금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만약 C 변호사님께서 위 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반환시까지 보관합니다.'라고 기재한 보관증을 교부한 사실, ③ C은 2020. 11.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추심금 5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④ 피고는 2020. 11. 20.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가 피고와 C에게 이중으로 돈을 변제한 사실 및 C 사무실에 맡긴 300만 원에 대하여 C에게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⑤ C은 2020. 11. 23.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C에게 2020. 10. 26., 원고에게 2020. 11. 5. 각 송달되어 2020. 11. 20.에야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어서(대법원 1996. 11. 25.자 95마601, 602 결정 참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미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로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청구이익의 소를 통하여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집행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을

저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이에 원고로서는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추심금으로 5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5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다음날인 2020.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2)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233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2020. 11. 20.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 원고가 피고와 C에게 이중으로 돈을 변제한 사실을 알게 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고 비로소 지체책임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2020.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5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1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21. 11.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채승원

판사박주영

판사김수양

1) 피고의 2021. 11. 8.자 준비서면 제2쪽 아래에서부터 5행 이하 참조